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24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 신설 등 관광거점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내용 추가 신설 (안 제4조~제5조)
- 다.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무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제14조)
- 라. 관광업무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4. 참고사항

-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내국인”이란”을 ““내국인 관광객”이란”으로, “다른 시·군·구”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단체를”을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이란”을 ““외국인 관광객”이란”으로, “단체를”을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를 자를 말한다.
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관광협의회(이하 “협회” 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추 수 있을 것
 -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

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회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회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보고 및 제출) ① 협회회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협회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관변경) ① 협회회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법인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10조(사무국) ① 협회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지원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개정
4.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제4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사 및 단체” 를 “단체나 법인 및 관광사업자”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7호) 중 “필요하다고” 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로 한다.

7.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8.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를 “제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범위에서” 를 “범위에서의” 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제6조(중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업무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해산신고 등) ① 협의회는 법인을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환수) ①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팸투어) 여행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등 대외 홍보
4. 관광기념품·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
6.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4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강릉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u>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사업체를 말한다.

4. ~ 7. (생략)

<신설>

<신설>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내국인 관광객”이란 -----
-----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
-----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

2. “외국인 관광객”이란 -----
-----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따를 자를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및 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

--- 단체나 법인 및 관광사업자 ---

-----.

- 1. ~ 6. (현행과 같음)
- 7.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 8.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 10. -----
----- 시장이 필요하다고 -----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신설>

② (생략)

제5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신설>

제5조(지원내용) ① 제4조-----

-----.

1. ~ 3. (현행과 같음)
4. ---- 범위에서의 -----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지원 제외) -----

----- 제5조-----
-----.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관광협의회 (이하 “협회” 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
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
거나 갖추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
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
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
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
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신 설>

제8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

<신 설>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관변경) ① 협의회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법인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신 설>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

<신 설>

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지원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개정
4.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 설>

사항

② 협의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정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업무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

<신 설>

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 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해산신고 등) ① 협의회는 법인을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 제10조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20조(환수) ①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합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팸투어) 여행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등 대외 홍보

4. 관광기념품·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

6.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생 략)

<신 설>

제2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24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제12조 (생 략)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강릉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및 이메일	비 고
1					
2					
3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 · 특별회원 또는 정회원 · 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발기인 대표 ○○○ (서명)

재 산 총 괄 표(목록)

총 계							
1. 기 본 재 산	구 분	소재지	수량	평가액(원)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건 물						
	토 지						
	출연금	-	-				
	소 계	-	-				-
	2. 운 영 재 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현 금		-	-				
컴퓨터		○○	○대	○○만원			
차 량		○○	○대	○○만원			
소 계		-		○○만원			-

위 사실을 확인함

20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강릉시장 귀하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

1. 총괄

(년 월 일 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그 밖의 재산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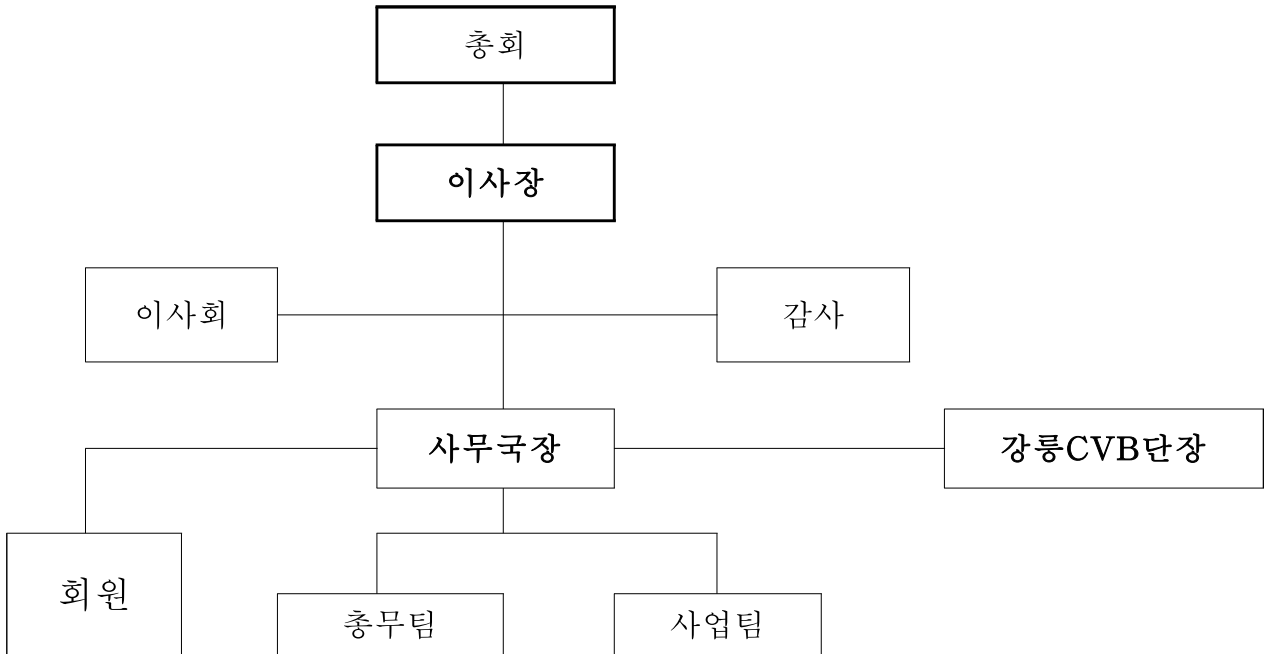
- ※ 1)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2. 직종 및 정원
3. 직원채용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 설
7. 세입세출 예산서
8. 그 밖의 법인 운영 관련사항

1. 사업개시 예정표

- 1) 사업개시 예정일 :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력·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그 밖의 용품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컴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2017)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기부금 수입	기부금			
·	·	·			
·	·	·			
·	·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20 년)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인건비	임 금			
·	·	·			
·	·	·			
·	·	·			
·	·	·			
세출합계					

8. 그 밖의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약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임원조서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학력	주소	현직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취 임 승 낙 서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이번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임기 ○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총회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그 밖의 안건(있을 경우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 * *	<p>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p> <p>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p> <p>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발기인(A) * * *	* *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발기인(B) * * *	제청입니다.
발기인(C) * * *	삼청입니다.
사회자 * * *	이의 없습니까?
발기인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사회자 * * *	<p>그럼, * *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까.</p>
임시의장 * * *	<p>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p> <p>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p> <p>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p> <p>사무국장 000님께서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무국장	0 0 0	(설립취지문 낭독)
임시의장	* * *	사무국장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D)	* * *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발기인(A)	* * *	재청입니다.
발기인(F)	* * *	삼청입니다.
임시의장	* * *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발기인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임시의장	* * *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0 0 0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임시의장	* * *	사무국장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E)	* * *	제5조의 ...는으로 하는 것이 더....
발기인(B)	* * *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좋을 듯 싶습니다.
임시의장	* * *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발기인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함)
임시의장	* * *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발기인(C)	* * *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 * *을 추천합니다.
발기인(A)	* * *	재청입니다.
발기인(B)	* * *	삼청입니다.
발기인	(전원)	(* *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이사장	* * *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3.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강릉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장

직인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명”을 “이
사 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이사장 (인)

강릉시장 귀하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황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변경현황	변경 전			변경 후			
재산 변동 현황	구분	증가 전			증가 후		
	계						
	기본재산						
	운영재산						
임원변경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행 (구)	개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I.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II.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III.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IV. 위탁사업 운영	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V. 임원 등	1. 임원·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적 적법한 운영 여부		
VI.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 받은 때 및 연도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거짓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VII.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강릉시 관광협의회

「민법」 제82조에 따라 법인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강릉시장 귀하

※ 그 밖의 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사람 또는 해산한 때의 이사
- 청산인 직무
 -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